[별지 제2호 서식] 성희롱・성폭력・스토킹 고충상담 신청서 <개정 2024. 12. 00.>

성희롱 · 성폭력 · 스토킹 고충상담 신청서

신청인 구분	☐ 피해자 본인 ☐ 대리인(조력자) ☐ 제3자(목격자 등 고발, 제보)			
신청인	디지털 식별코드	**익명, 가명 가능**	성별	
	휴대전화		전자우편	
희망하는 상담방식	☐ 유선 ☐ 메일 ☐ 대면 ☐ 기타			
피해자 (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)	성명		소속부서	
	성별		직급	
행위자	성명		소속부서	
	성별		직급	
피해내용	. **언제, 어디서,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**			
행위자와 공간분리 여부	☐ 공간분리 되어 있음 ☐ 공간 분리되어 있지 않음			
다른 기관* 조치 요청 여부	☐ 있음 ☐ 없음			
	. **있다면 언제, 어느 기관에 하셨습니까?** * 기관 예시 : 수사기관(경찰, 검찰), 국가인권위원회, 인사혁신처 인사신문고,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 기관 (여성긴급전화, 해바라기센터, 한국여성인권진흥원, 한국여성의전화 등)			
증인 및 증거유무	. **피해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.**			

「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성희롱·성폭력·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*가명 가능, 익명신청 시 생략 가능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귀하